

건강센터 규정

개정 : 2013. 10. 29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본 건강센터는 경희대학교 건강센터라 칭한다.

제 3 조(소재) 본 건강센터는 경희대학교에 둔다.

제 4 조(구성) 건강센터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.

1. 건강센터 소장(전문의) 1명
2. 의사 약간명
3. 간호사 약간명
4. 기타 약간명

제 5 조(업무) 건강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 및 진료
2. 병원 의뢰
3. 기타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

제 6 조(재정) 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비]
2.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부 칙

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